

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

의안 번호	27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년 11월 일
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1. 제안이유 : 현재는 충청북도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산림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(개정 '95.8.30)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어 박달재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
- 어린이 : 7세이상 12세이하
- 청소년 및 군인 : 13세이상 20세이하인자,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 군인
(전투,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 포함)

- 일반 : 21세이상 64세이하

- 단체 : 30인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

○ 입장료의 징수기준 : 별표 1 (안 제4조)

○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: 별표 2 (안 제6조)

○ 입장료의 면제 (안 제7조)

-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
※ 종전에는 도조례에 의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산림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어 타시도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참고하여 형평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종전의 도조례와 비교하여 약 30%정도 인상되었음.

3. 근거법령 : 산림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

붙 임 :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

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어린이 : 7세이상 12세이하인자(초등학교 학생)를 말한다.
2. 청소년 및 군인 : 13세이상 20세이하인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(전투,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.)을 말한다.
3. 일 반 : 21세이상 64세이하인자를 말한다.
4. 단 체 :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.
5. 입장료 : 휴양림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6. 시설사용료 :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

제3조 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박달재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 (입장료)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.

제5조 (입장료 징수등)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.

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6조 (시설사용료) ①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.

②제1항외의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설치시 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정한다.

제7조 (입장료의 면제)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1. 국민 및 그 수행자
2.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
3. 6세이하인자 및 65세이상인자
4. 국·공립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
5.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 하는 자
6. 장애인
7. 국가 유공자
8. 휴양림내 동식물의 조사·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

제8조 (요금표의 게시) 자연휴양림 내에는 별표1, 별표2호에 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.

제9조 (세입세출등) ①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.

②자연휴양림 관리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유지 보수 관리한다.

제10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 표 1)

입 장 요 금 표

(단위 : 원)

구 분	일 반	청소년,군인	어 린 이	비 고
개 인	1,000	700	500	
단 체	700	500	300	

시설사용 요금표

(단위 : 원)

시 설 명	구 분	사 용 기 간	요 금	비 고
주 차 료	· 소, 중형차량 (승용, 봉고차)	1대 / 1일	2,000	※ 1일 사용료는 익일 11시까지로 하여 11시 이후는 추가요금 징수
	· 대형차량 (버스, 화물차)	1대 / 1일	4,000	
숲속의 집 (통나무집)	· 4 인용	1동 / 1일	20,000	5평 (제3야영장) / 5평 (가스, 난방시설) 6평 (") 13평 (")
	· 5-9 인용	"	20,000/ 25,000	
	· 9-14인용	"	35,000	
	· 15-20인용	"	70,000	
	· 21-30인용	"	100,000	
침구제공		1채 / 1일	1,000	기본무상제공 : (요1,이불1,배게2) 기본초과시 추가요금 징수
캠 프 화이어장		1회 사용	20,000	장소만 사용시
오토캠프장		개소 / 1일	5,000	주차 및 야영 4-5 인용 텐트 1조
야 영 장		개소 / 1일	2,000 5,000	야영 4-5 인용 텐트 1조 20인용 텐트 이상
정 자	· 소 형 (2평 미만)	개소 / 1일	2,000	
	· 대 형 (2평 이상)	개소 / 1일	5,000	
평 상	· 소 형 (2평 미만)	개소 / 1일	1,000	
	· 대 형 (2평 이상)	개소 / 1일	2,000	
눈썰매장	· 어 린 이	1회 입장시	2,000	썰매 대여포함
	· 청소년, 군인 일 반	1회 입장시	3,000	
테니스장	1 면당	시간 / 당	3,000	
강 의 실		1일 / 1동	30,000	